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경 찰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안이유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표에 배점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제외함(안 제43조)
- 다.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명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으로 분류함(안 별표 1의2)
- 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5 및 별표 6)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찰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 3.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시험과목)”을 “(필기시험 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목은”을 각각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과목”을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과목은”을 “필기시험 필수과목은”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대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3조제1항 본문 중 “매종목”을 “각 종목”으로, “평가종목 총점의”을 “종목 만점의”으로,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을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로, “전과목”을 “전 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과목”을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필기시험”을 “필기시험(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다)”으로, “전과목 총점의”을 “전 과목 만점의”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에서 영어 과목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한국사 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3조,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인 정 과 목
○ 필수 이수과목 :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 선택 이수과목 :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비고

각 과목(유사과목 포함)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경과별 분야별 시험별			경과별		일반		항공		정보통신	
			분야별		일반(보안)		항공		전산·정보통신	
경정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3차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민법개론		100점		행정법		100점	
							항공법규		100점	
	제4차	필수	행정법		100점		비행이론		100점	
			형법		100점		행정법		100점	
			형사소송법		100점		관제이론		100점	
		선택 (1개)	범죄학		100점		항공역학		100점	
			국제법		100점		기관학		100점	
			민사소송법		100점		형법		100점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3차	필수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헌법		50점		항공영어		100점	
			형사법		100점		항공법규		100점	
			경찰학		100점		비행이론		100점	
		선택 (1개)								

비고

- 한국사 및 영어는 배점이 없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
(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찰학 :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과목은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경과별 분야별 시험별		일반					
		일반(보안)		세무·회계		사이버	
제3차 시험	필수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영어	-	영어	-	영어	-
		형사법	120점	형사법	120점	형사법	120점
		헌법	60점	헌법	60점	헌법	60점
		경찰학	120점	세법	80점	정보보호론	80점
		범죄학	60점	회계학	80점	시스템· 네트워크보안	80점
	선택 (1개)	행정법	40점	상법총칙	60점	데이터베이스론	60점
		행정학	40점	경제학	60점	통신이론	60점
		민법총칙	40점	통계학	60점	소프트웨어공학	60점
				재정학	60점		

비고

1. 한국사 및 영어는 배점이 없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2.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
(수사·증거 각 15% 내외)
 - 나.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다. 경찰학 :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라.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경과 분야 계급	일반						항공	정보통신	수사			보안
	일반 (보안)	전투	외사	경찰 특공대	교통 공학	경찰 행정	항공	전산· 정보통신	법학	세무 회계	사이버 수사	사이버 보안수사
총경 · 경정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 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행정법, 형법, 국제법,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신				
	선택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 학 중 1 과목	전산학 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 · 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 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형법, 국제법,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신				
	선택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 학 중 1 과목	전산학 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사 · 경장 · 순경	필수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 소송법, 군사학	한국사, 형법, 형사 소송법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	경찰 교통론, 교통공 학원론	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한국사, 항공영어, 항공법규, 비행이론	한국사, 영어, 컴퓨터 일반	형법, 형사 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	정보 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선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통신이론, 정보관리 론 중 1 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 렌식개론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 렌식개론 중 1과목
--	----	--	--	--	--	--	--	--	------------------------------	--	--	--	--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중 한국사 및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배점이 없고,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범죄학의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2.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나.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다. 경찰학 :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라.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3.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과목은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4. 경찰청장은 외사분야의 각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아닌 외국어에 대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에 추가할 수 있다.
5. 외사분야의 각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외국어과목(영어는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41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총정·경정	경감·경위 (간부후보생)	경사·경장· 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 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중앙일보(주)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41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총경·경정· 경감·경위	경사·경장·순경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시험과목)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u>필기시험</u> <u>과목은</u> 별표 2와 같고, 경찰간 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u>필기시험과목은</u> 별표 3과 같으 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의 <u>필기시험과목은</u>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u>시험과목</u> 중 다음 각 호의 <u>시험과목은</u> 해당 호에 서 정하는 시험으로 <u>대체할 수</u> <u>있다.</u> 1. 영어 과목: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u>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u> <u>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u> <u>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u> 나. <u>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u> <u>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u> <u>시험은 제외한다)</u> 2. <u>한국사 과목: 경찰청장이 지</u> <u>정하는 한국사시험</u> ② (생 략)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경찰	제41조(<u>필기시험 과목</u>) ①----- ----- <u>필기시험</u> <u>과목 및 배점은</u> ----- ----- -- <u>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u> -- ----- ----- <u>필기시험 과목 및 배</u> <u>점은</u> --. ----- ----- <u>필기시험 과목</u> -- - <u>필기시험 필수과목은</u> ----- ----- <u>대체한다.</u> 1. <u>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u> <u>영어능력검정시험</u> 2. <u>한국사 과목: 별표 6에서 정</u> <u>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체력검사는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 각 종목
----- 종목 만점의

-----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만점
의 60퍼센트 이상,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의 -----

-----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
-----.

② -----

----- 필기시험(필수과
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
을 제외한다) --- 전 과목 만점
의 -----

-----.

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 설>

③ ~ ⑤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에서 영어 과목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 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한국사 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3150-2832